

『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해 기량이 뛰어난 인재영입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술단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,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구미시립예술단 구성, 단원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
(안 제2조 ~ 제10조)
 - 예술단에 부단장 추가 : 문화예술회관장
 - 단원 등의 위촉기간 변경 : 1년 → 2년
 - 위촉기간 만료 단원 등에 대한 정기평정 근거 마련
 - 상위 법령에 따라 단원 등의 연령제한 규정 삭제
- 구미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설치, 구성 및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(안 제11조 ~ 제18조)
 - 위원의 임기 변경 : 1년 → 2년
- 예산, 기금관리, 보수 및 실비변상, 입장료에 관한 사항
(안 제19조 ~ 제22조)
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「지방자치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구미시립예술단 운영을 위한 「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관련법령에 따라 단원 등의 연령제한 규정을 삭제하고, 우수한 인재 영입을 위하여 단원 등의 위촉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위촉기간 만료 단원 등에 대한 정기평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술단 운영을 위해 전반적인 사항을 수정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